

제재내용 공시안

1. 조합명 : 포항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2. 8. 8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변상 : 3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사실

○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부적정으로 부실 발생

- 1급 이○○ 외 2명은 차주 권○○에게 근린생활주택을 담보로 기업운전자금대출 290,000천원을 취급하면서 전입세대열람 내역과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확인을 통해 담보물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, 담보물 현장답사 시 임차인 및 거주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않고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만 믿고 형식적으로 현장답사 후 대출을 취급하였고, 이후 경매결과 당초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차감한 84,000천원보다 36,000천원이 더 많은 120,000천원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배당된 결과 40,605천원의 손실이 발생함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17조(대출실행절차 및 대출 신청 시 징구 서류), 제163조(담보 가액 산출기준), 제171조(주택담보 취득 시 유의사항)